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2호

용인시 감사관(개방형직위)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용인시 감사관(개방형직위)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1월 9일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계획

채용분야	직 급	선발인원	근무기간	직무내용	비고
감사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 4호)	1명	2년	■ 본청,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한 감시·조사 ■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등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언론보도 사항의 조사·처리 ■ 공직자 부정·비리·비위의 예방을 위한 활동 ■ 공직자 재산 등록, 공직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인권조례 제정 및 관련 업무 추진 ■ 그 밖에 감사 및 조사 관련 사항	

2. 자격기준 및 시험방법

○ 채용자격기준

▹ 공통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 직에서 교체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업무 관련성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이 근무했던 법인 또는 단체를 퇴직하기 전 2년 이내에 수행한 업무가 임용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의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의 업무
3.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
4. 조세의 조사, 부과 및 징수 업무
5.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 등의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을 하는 업무

▹ 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함)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7 및 별표8 또는 「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 5급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음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고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처리

▹ 2차 시험 : 면접시험(능력요건 등 적격성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
※ 심사대상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1. 22.(월) ~ 1. 26.(금) / 5일간(공휴일·주말 제외)
- 접 수 처 : 용인시청 인사관리과 인재채용팀(시청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인터넷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접수사실을 반드시 담당자(☏031-324-3602)에게 전화로 고지하여야 함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
 ▶ 주소 : [우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인사관리과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우체국 마감시간(16:30 등) 유의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우편봉투 겉면에 '용인시 감사관(개방형직위) 응시원서' 표기
- 우편접수 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우편접수 시 기재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 책임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용인시청 인사관리과 인재채용팀(시청 5층)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일요일·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24. 2. 1.(목) 전·후 (용인시 홈페이지)	2024. 2. 5.(월) 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용인시 홈페이지)	2024. 2. 14.(수) 전·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여부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니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확인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채용/시험정보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제출서류

<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① 응시원서 1부(붙임1/필수)

- 응시수수료(용인시 수입증지) * 감사관 : 1만원

✔ 수입증지 판매처 : 용인시청 1층 민원여권과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면제 (증빙서류 지참시)

② 이력서 1부(붙임2/필수)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③ 자기소개서 1부(붙임3/필수)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경력 및 직무성과 중심)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4/필수)

✔ 작성 시 정책(사업)목표, 단계별 과제, 세부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붙임5/필수)**

⑥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붙임7/필수)**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붙임8/필수)**

⑧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석사 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붙임9)의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에 한함)

⑨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필수)**

1)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해야 하며, 6개월이 경과한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2)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3) 민간경력 기준으로 응시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주의사항)

-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받아 제출하거나 (붙임6)의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⑩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필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http://www.nhis.or.kr) 또는 1577-1000번]

✔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⑪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

✔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

✔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본

✔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은 최신 자격증 갱신 사본 제출

⑫ 학위·연구논문 사본, 연구실적 목록, 기타 실적관련 자료 (해당자에 한함)

⑬ 각종 대회 수상, 상훈,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졸업증명서, 학력·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제출**

※ 모든 서류는 **사본제출이 원칙**,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3. 기타사항

○ 보수 및 근무시간

▹ 근무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연　　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의 1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 공무원 연금 등 연금 수급자는 반드시 연금 정지 여부 확인(공단에 문의)

▹ 기타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적용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약정 기간	연 봉 액		週당 근무시간
				하한액 (기준액)	상한액	
감사관	개방형 4호 (4급 상당)	1명	2년	64,509천원	-	40시간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합격자 제외)

▹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경력증명서 등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	인사관리과 인재채용팀 (031-324-3602)

개방형직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Ⅰ. 기본사항

소속기관	직위명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보직가능 직급
용인시	감 사 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4급 상당)	전체
주요업무내용			**비 중**
본청, 소속기관, 소관단체, 산하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한 감사·조사			20
주민불편·민원·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등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20
주요 정책 집행, 계약 등의 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15
청렴시민감사관, 옴부즈만 등 부패방지 및 청렴 시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언론보도 사항의 조사 처리			10
공직자 부정·비리·비위의 예방을 위한 활동			10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인권조례 제정 및 관련업무 추진			5
그 밖에 감사 및 조사 관련 사항 등			5
관련분야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			
필요지식 및 기술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및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에 대한 이론적 전문성 및 경험			

Ⅱ. 직무수행요건

1. 임용자격 요건

필수요건	① 학력제한 ■ 무 □ 유 (학력 요구수준 :) ② 필수 자격증 ■ 무 □ 유 (종류 및 등급 :) ③ 기타 필수요건 ■ 무 □ 유 (요건 :)

자격기준 (다음의 응시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함)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7 및 별표8 또는 「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 5급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능력요건	**① 전문가적 능력** ⅰ)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ⅱ)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ⅲ)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② 전략적 리더십 ⅰ) 비전 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ⅱ)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ⅲ)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③ 변화관리능력 ⅰ)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ⅱ)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ⅲ)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
	④ 조직관리 능력 ⅰ)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ⅱ) 업무개선능력 ⅲ) 자원활용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ⅰ)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ⅲ)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3. 특별요건	**① 자격증** ■ 무 □ 유 **② 외국어** : 해당사항 없음 **③ 정보화능력** : 해당사항 없음 **④ 기타 특별요건** ■ 무 □ 유 (요건 :)